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본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과 과제

권 혁 남(중재위원,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인터넷

1969년 미국 국방부의 알파넷(ARPANET)에서 시작된 인터넷은 처음에 엘리트들만이 사용하다 1991년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이 나오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의 대중화를 위한 두 번째 혁신은 1993년 모자이크 브라우저(Mosaic browser), 그리고 1994년 넷스케이프 브라우저(Netscape browser)인데, 이것들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데이터와 이미지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다(Klotz, 2001).

무그(Moog, 2001)는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즉각적 접근성(instant access)이다. 인터넷은 이용자가 수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둘째, 중재되지 않는 접근성(unmediated access)이다. 뉴스나 정보에 접근할 때 제3자로부터 중재 없이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는 애기다. 인터넷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상호작용성과 탈대중화(interactivity and demassification)이다.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은 새로운 토론광장 역할을 한다. 각종 사이트에 여론조사, 친구나 동료에게 이메일을 통해 정보의 전달 및 교환, 청원서 사인 및 회람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을 개인과 소집단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언론은 신문이나 방송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언론이 갖는 매체 특성 때문이다. 인터넷은 대중매체와 같이 일 대 다의 고정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인터넷은 과거의 미디어가 보여주지 못했던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한 인간이 처한 커뮤니케이션 상황, 예를 들면 개인적 대화상황, 집단 토의 상황, 또는 정보 이용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이 웹을 기반으로 한 서버 브로드캐

스팅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사의 구성과 이용과정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동시에 포함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인터넷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일방향적 매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수용자와 저널리스트 또는 수용자간의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호작용적인 매체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황용석, 2004).

인터넷이 생성해내는 가상공간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과정에 중간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가공되지 아니한 생생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거의 없으며, 쌍방향의 정보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 독자와 기자의 구별도 모호하고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진실성과 그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문제가 난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자정능력 또한 기존의 매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매체로 인터넷이 거론되는 것이다(박선영, 2004).

인터넷언론은 인터넷에서만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일간지 형태의 언론이라고 규정되는데(박선희, 2001), 언론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대체로 주류 인터넷언론, 인텍스형 인터넷언론, 독립형 인터넷언론, 토론/패러디 형 인터넷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황용석, 2004). 여기에서 주류 인터넷 언론은 뉴스 생산과정을 거친 기존의 기사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인텍스형 인터넷언론은 이런 기사를 매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뉴스 생산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박선희 & 주정민, 2004). 반면, 기존 언론과는 다른 독특한 뉴스 생산 및 뉴스 수용 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독립형 인터넷과 토론/패러디 유형의 인터넷언론을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박선희 & 주정민,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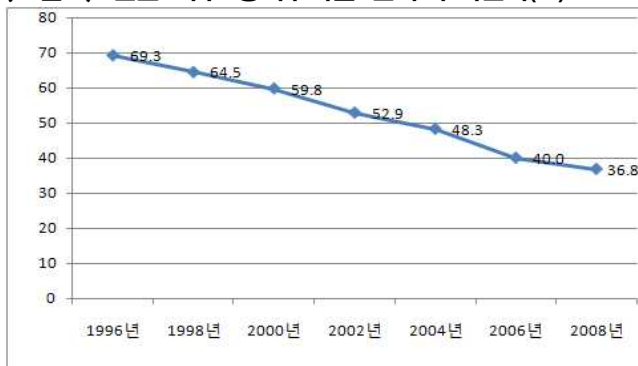
특히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과 같은 독립형 인터넷 언론은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는 등 다원적 정보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황용석, 2003) 대표적인 인터넷언론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는 국내외 수 만 명의 시민기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해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함은 물론 댓글 달기 등과 같은 이용자 피드백 기능 등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류에서 멀어져 있던 개인이나 계층의 표현의 자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저널리즘의 지평을 여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독립형 인터넷언론은 유·무형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압박이나 출입처제도와 같은 기존 언론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이효성,

2009).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미디어는 바로 인터넷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1%, 이용자수는 3,536만 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99.9%), 20대(99.7%), 30대(98.6%) 등 젊은 층의 대부분(98%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이고, 3~9세 인터넷 이용률은 82.2%, 40대 82.0%, 50대 48.9%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일상생활정보 의존도에서 인터넷(83.1%), 텔레비전(10%), 신문(4.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이용시간에서도 인터넷(2시간 22분), 텔레비전(1시간 25분), 휴대폰(52.5분) 순이었다(박소라 외, 2008). 이와 같이 정보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이용도가 기존의 올드 미디어를 크게 앞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문의 이용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언론재단(2008)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의 신문구독률은 1995년 69.3%에서 2002년 52.9%, 2008년에는 36.8%를 나타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신문 가구 정기구독률 변화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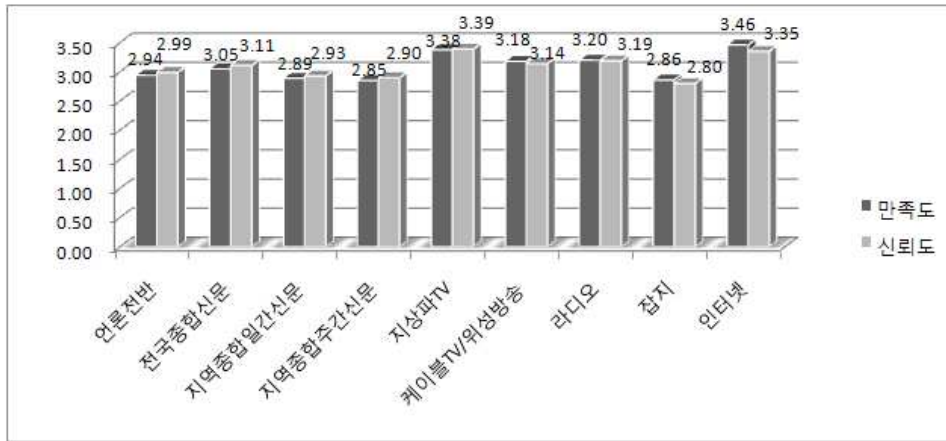


자료: 한국언론재단(2008)

정보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은 이용률뿐만 아니라 신뢰도와 만족도 면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체별 만족도는 인터넷(5점 만점에 3.46), 지상파TV(3.38), 라디오(3.20), 케이블TV/위성방송(3.18), 전국종합신문(3.05), 지역일간신문(2.89) 등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지상파TV(3.39)에 이어 인터넷(3.35)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어서 라디오(3.19), 케이블TV/위성방송(3.14), 전국종합신문(3.11)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 2008).

<그림 2> 매체별 만족도 및 신뢰도

(단위: 5점 척도 평균점, N=5,104)



자료: 한국언론재단(2008)

이와 같이 뉴스 및 정보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의 이용도와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터넷은 언론 관련 법제도 안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인터넷언론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가능성 못지않게 그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신문법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권혁남, 2006).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한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인터넷 포털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돼 왔다.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포털사이트와 제휴하면서 뉴스 공급채널이 양적으로 확대돼왔는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에 의한 보도보다 포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인터넷 포털 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09년 2월에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게 된다(이효성, 2009).

2.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

1) 2005년 제정 언론중재법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신문법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일주일간 게재 뉴스 건수의 100분의 30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의는 실질적으로 뉴스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작은 인터넷 매체는 물론 뉴스 전달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기사 배치를 통해 여론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털들이 조정·중재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김서중, 2006).

또한 인터넷신문의 특징들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중재법 역시 인터넷신문들에 의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신문에 난 기사가 누리꾼들에 의해 곳곳으로 퍼 날라지거나, 댓글로 인해 그 피해가 상승하였을 때 이로 인한 피해를 현재 법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움은 물론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체 수용 양식이 신문이나 방송과 다른 인터넷에 게재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수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적다. 방송은 뉴스를 보고 있는 한, 종이신문은 신문을 넘기는 한 수용자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접할 가능